

프랜차이즈 하나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</b></p> <p><b>제1조 &lt;생 략&gt;</b></p> <p><b>제2조 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(생 략) 8. "하나 B2B 에스크로 시스템 : B2B multi-clearing system"(이하 "MCS"라 합니다)이란 "에스크로 서비스"를 위하여 <b>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</b> 기반 하에 "은행"이 개발·운영하는 전자적 정산 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hanaescrow.com">www.hanaescrow.com</a>)을 말하며, "가맹본부"와 "가맹점사업자"는 'MCS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, 정산내역 등록, 확인 등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. 9. (생 략)</p> <p><b>제3조 ("에스크로 서비스"의 신청 및 약관 동의)</b> 1. "에스크로 서비스"를 신청하고자 하는 "가맹본부" 또는 "가맹점사업자"는 "MCS"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동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, 본 약관에 동의 후, <b>공인인증서</b>로 전자서명하여 "은행"에 "에스크로 서비스"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단, "가맹본부" 또는 "가맹점사업자"가 "MCS"에서 각각의 입금계좌 은행은 "은행"으로 한정합니다. 2.~ 5. (생 략)</p> <p><b>제4조 ~ 제8조 &lt;생 략&gt;</b></p> <p><b>제9조 (면책)</b> 1. ~ 2. (생 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프랜차이즈 하나 B2B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약관</b></p> <p><b>제1조 &lt;생 략&gt;</b></p> <p><b>제2조 (용어의 정의)</b> 1. ~ 7. (생 략) 8. "하나 B2B 에스크로 시스템 : B2B multi-clearing system"(이하 "MCS"라 합니다)이란 "에스크로 서비스"를 위하여 <b>인증기관 인증서</b> 기반 하에 "은행"이 개발·운영하는 전자적 정산 시스템(<a href="http://www.hanaescrow.com">www.hanaescrow.com</a>)을 말하며, "가맹본부"와 "가맹점사업자"는 'MCS'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가입, 정산내역 등록, 확인 등의 업무에 협조해야 합니다. 9. (생 략)</p> <p><b>제3조 ("에스크로 서비스"의 신청 및 약관 동의)</b> 1. "에스크로 서비스"를 신청하고자 하는 "가맹본부" 또는 "가맹점사업자"는 "MCS"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동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하고, 본 약관에 동의 후, <b>인증서</b>로 전자서명하여 "은행"에 "에스크로 서비스"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. 단, "가맹본부" 또는 "가맹점사업자"가 "MCS"에서 각각의 입금계좌 은행은 "은행"으로 한정합니다. 2.~ 5. (생 략)</p> <p><b>제4조 ~ 제8조 &lt;생 략&gt;</b></p> <p><b>제9조 (면책)</b> 1. ~ 2. (생 략)</p>	<p>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</p> <p>"공인"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</p>

프랜차이즈 하나B2B 에스프로 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3. “은행”은 본 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“가맹본부” 및 “가맹점사업자”가 <b>공인인증서</b>로 전자서명하고,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에 의존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 보호를 받으며, “가맹본부” 및 “가맹점사업자”가 제공하고 “은행”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당사자들이 통지한 여하한 전자적 방식, 서신, 자료,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</p> <p>4.~ 6. (생략)</p> <p><b>제10조 ~ 제17조 &lt;생략&gt;</b></p>	<p>3. “은행”은 본 약관의 제 조건에 따라 “가맹본부” 및 “가맹점사업자”가 <b>인증서</b>로 전자서명하고, 전자적 수단으로 제공한 지시 및 지침에 의존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행위함에 있어 보호를 받으며, “가맹본부” 및 “가맹점사업자”가 제공하고 “은행”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해당 당사자들이 통지한 여하한 전자적 방식, 서신, 자료,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</p> <p>4.~ 6. (생략)</p> <p><b>제10조 ~ 제17조 &lt;생략&gt;</b>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수정</p>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